

## 9. 주차장법시행령개정령(안)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고제1999-109호 1999. 3. 30.

###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- 가.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동일 용도군내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원칙적으로 단일화하여, 손쉽게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.
- 나.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, 종전에는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이미 확보된 주차장을 빼고 그 차이만큼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현행 주차장설치기준에 따라 낮은 용도에서 높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그 차이만큼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, 당해 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추가확보없이 용도변경을 허용함.

주택회보